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97호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7 6 1 호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 육 진 흥 과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61호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이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신설)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가능
 -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 가능(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
- 보조금 신청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의견 보내실 곳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체육진흥과(만수동, 남동구청)
 - ☎ 453-6284, FAX 453-2154
 -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입법 예고

4. 참고사항

- 「스포츠기본법」 제3조, 제16조
- 「스포츠클럽법」 제3조, 제9조, 제15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現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 시군구 스포츠클럽 현황
- 남동구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붙임] 전부개정 조례안 본문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신규 제정되어 2022. 06. 16.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스포츠클럽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관리 위탁 가능
 -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 보조금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 「스포츠기본법」 제3조, 제16조
- 「스포츠클럽법」 제3조, 제9조, 제15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現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 시·군·구 스포츠클럽 등록현황
- 남동구스포츠클럽 등록현황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 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스포츠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 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에 한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 시·군·구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2024. 3월기준)

구 분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관련조례 유무
남동구	5개소	1개소	○
연수구	9개소	1개소	-
부평구	-	-	-
계양구	2개소	2개소	○
미추홀구	3개소	1개소	○
서구	7개소	2개소	○
동구	-	-	-
중구	-	-	-
강화군	-	1개소	-
옹진군	-	-	-

□ 남동구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2024. 3월기준)

연번	법인/단체명	운영종목	등록일
1	도곡스포츠아카데미 인천점	야구	2022-09-14
2	전국 사회인유소년 야구 협회	야구	2022-09-14
3	인천YMCA 스포츠영재 클럽	수영, 스포츠영재	2022-09-27
4	골드 SHOT	태권도	2022-10-24
5	AMS풋살클럽	풋살, 축구	2023-12-19
6	사단법인 만수북축구클럽 (지정스포츠클럽)	축구	2024-01-17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